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 김대식·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6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5
3. 주요 조문별 검토	10
[참고자료]	5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김준혁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0.
3. 회부연월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6개 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인재 인재 육성 기본계획 등 제5조(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인공지능인재의 실태조사) 제8조(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인공지능인재 육성 기반 조성 제9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생 지원) 제10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원생 지원) 제11조(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12조(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제13조(기업 인공지능인재 개발기관의 지정) 제14조(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 제15조(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의 설립) 제16조(인공지능인재협회의 설립)	제17조(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설치) 제4장 인공지능인재 육성 사업 등 추진 제18조(인공지능인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9조(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 제20조(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21조(인공지능 지역인재의 확보) 제22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제23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 제24조(해외교류·연수 지원) 제25조(인공지능인재의 재교육 등) 제26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27조(청문)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과태료)
--	---

2. 총괄적 검토

가.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AI)은 최근 국가와 사회,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음. 의료, 복지, 교통, 환경, 행정, 국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성·생산성 향상, 문제 해결, 혁신을 가능케 하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과 생활의 근본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¹⁾ 우리나라도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19.12.17)하고 AI 인재 양성·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08.22.)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통하여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AI 연구자,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연구 환경과 처우의 한계로 인해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1) 미국은 AI를 포함한 10대 핵심기술 R&D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은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 육성에 5천억엔 규모의 경제안보기금 조성하였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인재 허브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방안 연구」, '24.12.31.)

- 2023년 기준 국내 AI 관련 기업의 81.9%가 AI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²⁾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AI 분야 12,800명의 신규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음.³⁾ 또한, 우리나라는 AI 분야 인재 순유출국으로 2024년 OECD 38개국 중 유출입수지 3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 AI 인재 유출입 통계를 보면, 2023년 이후 인구 만 명당 0.3명 이상이 유출되고 있음.⁴⁾

□ 이에 제정안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양적 부족과 질적 격차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AI분야에서의 인재양성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제정안은 현행 개별 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단위의 분산된 인재양성 정책으로는 우수 AI 인재의 양성 및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AI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특히 제정안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의 연속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부생 → 대학원생 → 박사후연구원에 이르는 전 교육·연구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규정을 둬으로써 인공지능 핵심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25. 5. 26.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7년까지 인공지능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2023. 8. 31.

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brain drain)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SGI BRIEF』 vol.32, 2025. 6. 18.

□ 다만, 법률 체계의 관점에서 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현재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산업통상자원부 소관)되어 시행(2025.1.17.)되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인공지능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2210451호,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는 점도 제정안 심사 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 참고로, 현재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2026. 1. 22.)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①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6) <참고 1> 제정안과 유사 법률(안)의 비교 참조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⁷⁾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⁸⁾

□ 또한, 산업통상부 소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법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간의 관계와 부처간의 업무분담과 조정에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음.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계부처의 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제정안과 내용·구성면에서 유사한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2210451호, 정동영의원 대표발의)과 AI 인재 육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2210957,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유사 법안들과의 중복성 방지 및 체계적·종합적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법률이 미비하므로, 해당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제32조⁹⁾에 따른 인재양성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협력 인재양성 정책,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재교육 포함)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인재 양성도 동일한 관점에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법·제도와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에서 담당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임.

9) 「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 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인재,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인재”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해외 인공지능인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인공지능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2) 검토의견

- 제정안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본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정¹⁰⁾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¹⁰⁾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없음.

- “인공지능인재”와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관한 정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첨단산업인재, 해외인재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 다만, 제정안의 인공지능인재의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19조, 제20조의 지원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인재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도록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¹¹⁾

11) 안 제19조(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이 인공지능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20조(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인재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통상적인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재’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인재 중 조문별 행·재정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시책,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이 법을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인재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2)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적인 규율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있지만,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하여는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해당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 것임.
- 제정안은 ‘인공지능 분야’로 한정해 우수인재의 육성·관리·활용에 대한 제도를 설계하고 특례 규정¹²⁾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의 특별법으로 보임.

12) 제정안 제22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제26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률과 제정안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 교육부는 제정안은 첨단산업 중 ‘인공지능’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는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임.

1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5조(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공지능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대학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인재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및 지원 방안 4. 인공지능인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기업 인공지능인재 개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
 3. 인공지능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인공지능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되어 있음.¹⁴⁾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¹⁵⁾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

14)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¹⁶⁾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¹⁷⁾

- 교육부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부처를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¹⁸⁾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재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를 (現)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인재 분과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6)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7)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4. 8. 6, 제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 9. 4, 제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승계되었음.

18)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런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면서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2008년과 2015년¹⁹⁾, 2022년²⁰⁾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동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인재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위원회의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나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별도 위원회 설치 없이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인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¹⁾

1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2015.4.7.

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통합」, 2022.9.7.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인공지능인재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인재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누설 금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7조(인공지능인재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수급 동향 2. 인공지능인재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3. 인공지능 관련 학사·석사·박사의 재학·졸업 현황 및 경력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 5. 대학등의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는 대학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인공지능인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공지능 인재 육성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한 규정은 각 법률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 의무 규정으로 두기도 하고 재량 규정으로 두기도 하므로, 인공지능인재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실태조사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

실태조사 의무화 규정	실태조사 재량 규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한편, 제정안은 실태조사 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인공지능인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공지능인재와 관련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인력 운영계획 등 영업·기관 관련 내부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²²⁾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법률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도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²³⁾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인공지능인재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재지도’

22) 제정안의 ‘대학등’은 안 제3조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인력수급분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축 관련 통계, 고등교육취업통계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인공지능 관련 분야 인재에 대한 지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9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생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이하 “인공지능분야”라 한다)를 전공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용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분야를 교육하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의 대상·범위, 생활비 용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원생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및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분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의 대상·범위, 생활비 지원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인공지능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인공지능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의 연속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부생 → 대학원생 → 박사후연구원에 이르는 전 교육·연구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규정을 두어, 인공지능 핵심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이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단절 없는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역량을 누적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에도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²⁴⁾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사업²⁵⁾ 등 예산 사업을 통해 석사, 박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²⁶⁾ 「학술진흥법」 등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²⁷⁾

- 한편, 제정안은 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가 집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을

24) 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원 등 우수인력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임.

25)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을 위한 사업임.

26) 참고 2. 교육부 AI 인재양성 사업 현황 참조

27) 「학술진흥법」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에 직접 규율한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다른 법률 등에서는 법률에서 해당 분야의 인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 인력 육성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등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용자 등 경제적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는 실질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체계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지원금을 모두 연구장려금과 생활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바. 인공지능 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취소(안 제1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2조(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등은 시설·장비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특성화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요건·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 AI 인재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여 인공지능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성화대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특성화대학 관련 현행 법률]

현행 법률	해외인재 유치 조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

이에 제정안도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 등을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적극 활용하려는 취지임.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AI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의견인 바,²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AI가 추가될 경우 해당 법률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음.

□ 한편,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등은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장비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요건·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음.

□ 교육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분야를 지원 중이나, AI는 타부처 이견 등으로 인해 전략산업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특성화대학의 지정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인공지능 특성화대학(원)을 교육부가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중복 문제는 없다는 입장임.

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디스플레이, ④ 바이오, ⑤ 로봇, ⑥ 방산 분야를 정하고 있음.

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과 인공지능인재협회의 설립(안 제15조 및 제16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며,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5조(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 인공지능인재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3. 인공지능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및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공지능인재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인재 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공지능인재의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인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인공지능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인공지능인재의 이직·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5.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6. 국가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인재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7.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관리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그 밖에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정책 개발, 교육·훈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정책 효율성과 전문성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재단의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인재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고, 협회는 산업계 중심으로 활동하며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현장 수요 기반 정책과 인재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재단 설립의 경우 안 제15조제5항에 따라 설립과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관 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협회 설립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 선도기관,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향후 필요시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계의 인공지능 인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기업과 단발적인 협의보다 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아.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설치(안 제17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협회에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7조(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설치) ① 협회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상생협력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2. 인공지능인재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 인공지능인재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인공지능인재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인재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해외의 우수한 인공지능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협회에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협회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규정을 입법하더라도 정부에서 해당 기금의 설치를 보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 교육부는 협회에 기금을 설치한 유사 입법 사례도 있는 만큼,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회 차원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29)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① 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자. 인공지능인재의 활동 및 활용 지원(안 제18조 및 제19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가 등에게 인공지능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이 인공지능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8조(인공지능인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인공지능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공지능인재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이 인공지능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참여 또는 출연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인재 유희 상태 해소와 취업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이 인공지능 인재를 채용할 때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기업에서의 인공지능 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81.9%가 인공지능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12,800명의 신규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인력의 채용·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해당 인재의 취업과 관련한 정보제공이나 기업과의 매칭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안 제19조제2항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교육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는 있으나,

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인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인공지능 분야로 특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제18조제1항에 따라 석·박사급 인공지능 인재의 취업 연계 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안 제20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가에 인공지능인재의 자질향상 등을 위해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0조(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 인재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가 군 복무 중에도 능력을 발전시키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업·연구·취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해당 인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면서 국내의 연구·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대체복무 제도가 있으며,³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9조의5에서도 제정안과 동일하게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³¹⁾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제도와의 역할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는 「병역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바, 제정안과 같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법안에 규정하는 경우 향후 「병역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³²⁾

□ 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AI 분야는 국가 간 경쟁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공계 인재 중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서도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고 있

30)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에 종사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함.

3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고, 제정안이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적다는 의견임.

카.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안 제22조 및 제23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해외 인공지능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이민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2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① 국가는 해외 인공지능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인공지능인재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 인공지능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해외의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한 것임.
-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재유치 매력도가 낮아 인공지능 인재가 순 유출되고 있음³³⁾.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재 유치 매력도는 세계 30~40위권이고, 2023년 AI 인재 이동지표에서 -0.3명(10만 명당 0.3명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내에 유치된 우수한 해외 인공지능인재에게 정주여건 지원,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등에 대한 특례부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3) 한국의 인재유치 매력도 순위(IMD, 2023): ('23) 43위 → ('24) 35위

□ 다만,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현행 법률에서 이미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해외인재 유치 정책 추진 시 기존 정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특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첨단산업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한 해당 법률의 규정과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외인재 유치 관련 현행 법률]

현행 법률	해외인재 유치 조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교육부는 한국의 AI 인재 유치 여건, 주요국의 AI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 인재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입국·체류 등 특례 부여가 필요하지만,

일반체류자격, 영주자격의 기준, 범위 등의 예외를 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대해서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세제지원 특례(안 제26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6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제정안은 세제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최근 AI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5.3.14.)된 바 있는데,³⁴⁾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를 둬으로써 AI 인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세제지원 특례 규정의 경우 현행법 체계상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법률]

현행 법률	규 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교육부도 일부 제한된 법률에서만 조세특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 지원 명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파.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안 제29조 및 제30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은 별칙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토사항

- 제정안 제29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제30조는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위탁자에 대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규정들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30조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9조제2항에서도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유사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30조제2호)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임.

하. 벌칙(안 제31조)

(1) 제정안의 요지

- ☐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 시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1조(벌칙)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토사항

- ☐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인공지능인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에 안 제31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³⁵⁾

35) 「건설기술 진흥법」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제정안도 벌칙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육성 과정에서 취급되는 중요 자료의 보호와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정안과 유사한 법률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도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³⁶⁾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인력수급분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안 제28조 및 제3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인공지능인재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과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인공지능인재협회가 아닌 자는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인공지능인재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사항

-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거나 인가·등록된 기관·단체는 국가가 일정한 공적 성격과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러한 명칭을 민간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국민이 해당 기관을 국가가 보증한 공적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⁷⁾

□ 다만, 다른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은 보통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 한정되는데 반해, 제정안의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인공지능인재협회는 지원·협력기관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과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짓 자료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처분을 마련하고 있음.

참고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⁸⁾

3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출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8)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유사명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사명칭 사용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참고 1

제정안과 유사 법률(안)의 비교

제정안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7조(인공지능인재의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제19조(인력수급분석)
-	제8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제8조(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제9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생 지원)	-	-
제10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원생 지원)		
제11조(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12조(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제18조(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	-
제13조(기업 인공지능인재 개발기관의 지정)	제14조(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	제15조(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14조(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	제11조(인재육성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제15조(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의 설립)	-	-
제16조(인공지능인재협회의 설립)	제12조(인재육성협의회의 설립 등)	제15조(협회의 설립)
제17조(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설치)	제13조(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	제16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제17조(인공지능 교육기관등 지원)	-
제18조(인공지능인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
제19조(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	-	-
제20조(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	-
-	제23조(인공지능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제21조(인공지능 지역인재의 확보)	-	-

제22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제21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제22조(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23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0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4조(해외교류·연수 지원)	제19조(해외교류·연수 지원)	-
제25조(인공지능인재의 재교육 등)	-	-
제26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제24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제27조(청문)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제2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2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참고 2

교육부 AI 인재양성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26 예산안 (백만원)
신규 대학생 AI 기본 교육지원(2232-32 3)	· 대학 AI 기본교육 과정 개발지원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지원	· (대학) 비전공자 맞춤형 AI 교과 과정 을 개발하여 AI 윤리의식·AI 활용 능 력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과정 등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원양성기관) 예비교원 대상 AI 교 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권역별 거점대 학을 통한 교원양성기관의 AI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과정 운영 기반 지원 추진	11,840
국립대학 육성사업 (2704-301)	신규 AI거점대학	AI 단과대학·전공 등을 운영하여 학사 및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0,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256-300)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AI인재양 성 부트캠프) (신규 AI+X인재양성 부트캠프) ※ 내역중 일부는 일반사업(비AI)	AI 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 성을 위하여 AI 부트캠프 확대(3교→ 40교) 및 AI+X 융합과정 지원(신규 10 교) 신설	134,175 (AI62,00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2303-300)	4단계 두뇌한국21 (AI교육연구단 지원) (신규 AI+X교육연구단 지원) ※ 내역중 일부는 일반사업(비AI)	글로벌 AI 인재 경쟁에 대응하여, 전 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AI 분 야 교육연구단(팀)에 연구장학금 지원	533,066 (AI17,9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1031-313)	· 초·중등 SW융합교 육 강화	초·중등학교 AI·SW 교육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기반 마련	1,96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4134-303)	· 성인의 디지털 역 량 강화 지원	대학이 재직자에게 AI+X 교육을 지원하는 AID 30+ 집중캠프 5개교 내외, AID 묶음강좌 3개교 내외 신규 선정	4,150
한국장학재단 출연 (2638-3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이자지원 (신규 AI/SW분야 학업장려금대출)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227,267 (AI2,923)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정보화) (2704-503)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IS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실시	305

자료 : 교육부

참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인재양성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6년 예산 (백만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AI 대학원))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40,000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AI융합혁신대학원)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양성	21,000
생성AI선도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27,000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R&D) (사업명 변경 : AI스타펠로우십지원)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인재 양성	34,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45,127
지역디지털인재양성 (경북53이노베이션아카데미(경산))		9,355
지역디지털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29,002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금융, 건설기계, 의료 등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8,4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